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7. 1.(월) 총 4매(본문3)	
담당 부서	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	담당자	• 사무국장 김종학, 서기관 이성주, 사무관 이재훈 • ☎ (044) 201-5347
보도일시		2019년 7월 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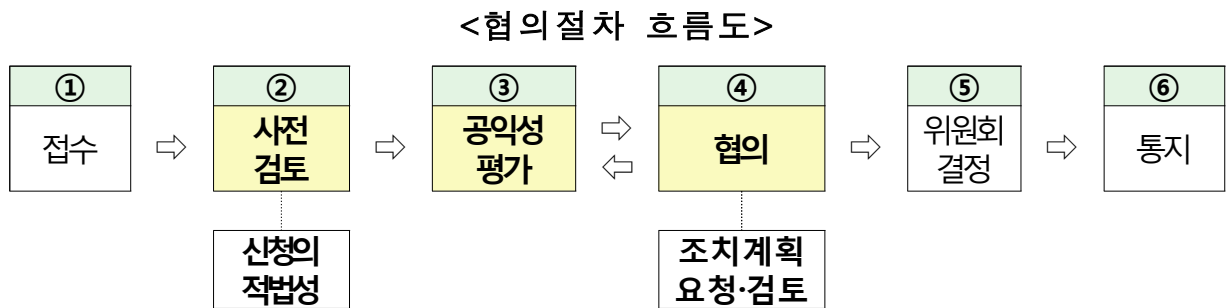
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

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...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·운영

-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(이하 '토지수용사업')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이하 '중토위')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,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개정 토지보상법')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.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.
- 중토위(위원장 김현미)는 법 시행에 맞추어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.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협의절차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.
 - 우선,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. 종래 의견청취의 경우,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다. 그러나 바뀐 협의절차에서 '협의'는 사실상 '합의'에 가

값다고 평가된다.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.

- 다음으로,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.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.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·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,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.



* : 기존 의견청취보다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부분

- 이를 위하여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,*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.


* 사업의 공공성(대중성, 개방성 등), 수용의 필요성,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여부, 사업시행자 유형 및 사업수행의 의사와 능력 등

- 아울러,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·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,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- 한편 이러한 변화에 맞춰, 중토위는 현행 수용사건과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외에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·운영하기로 하고,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준비에 들어갔다.

-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“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,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말하였다.

 <p>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재훈 사무관(☎ 044-201-534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

□ **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현황**

- (근거)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
- (구성)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(국토교통부장관) 및 위원 14명*(상임 1, 비상임 13)으로 구성
 - * 법조인(3명), 감정평가사(3명), 공법학 교수(4명), 토지행정 전문가(4명)
 - **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(고법 부장판사)이 위원장 직무대행
 - *** 위원장 직무대행과 상임위원은 매월 참석 / A조(6명) :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참석 / B조(6명) :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참석 - A조와 B조 위원구성이 다름
- (기능) 수용재결, 이의재결, 개발부담금 등 행정심판, 공익성 협의
 - 국가 또는 시·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2이상 시·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수용 재결
 -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
 -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이의재결
 - 토지보상법(제21조)에 따른 사업인정 협의
 - 행정소송,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

□ **토지수용 절차**

